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법률 제20474호, '24.10.22.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및 관련 조사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국토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 및 권고 대상 터널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연장 200m 이상 터널)하고 지원금 지급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함

*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철도설계기준」

나. 재난방송 등 수신실태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3항 신설)

○ 중계설비 설치여부 조사를 위하여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수신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방송매체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도록 함(제1항)

- 실태조사 실시 전에 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제2항) 조사 결과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항)

다. 방송통신설비 수신실태 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규정(안 제28조의4 제4항 신설)

- 재난방송 수신실태 조사업무는 국가사무인 바, 해당 사무를 보조사업자로서 지속 수행해 온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무 처리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제28조의5로 이동한다.

제28조의3의 제목을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지원)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는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비용, 설치의 효율성·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관리 비용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 중 연장 2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방송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8조의4를 신설하여 제목을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조사)”로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설치 여부의 조사는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부터 수신시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 지역 전체 구간에 대하여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 매체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무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지원) ① 국가는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비용, 설치의 효율성·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관리 비용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 중 연장 2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방송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u><신 설></u>	제28조의4(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조사) ①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설치 여부의 조사는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

	· 점유자·관리자로부터 수신 시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 지역 전체 구간에 대하여 법 제40조의 3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 매체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3제2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 조사 업무를 「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무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제28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생략)	제28조의5(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에서 이동 <년 월 일.>]
<신 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연 락 처	(02) 2110 - 1448